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167호
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조 규정에 따라 수립된 '201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개발사업부문)'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성북구 정릉동 894번지 일대 외 1개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의3 제4항 규정으로 해제하고, 같은법 같은조 제7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년 6월 16일

서울특별시 장

1.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: 2개 구역

○ 성북구 정릉3동 894번지 일대(정릉 제3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, 49,760㎡)

구분	구역 번호	동 명	지번	면적 (ha)	용적률	건폐율	층수	추진 단계	사업시행 방 식	정비 유형	예정구역지정일 (기본계획변경일)
당초	2	정릉3동	894	5.0	170%	60%	5층 이하	1	주택 재개발	수복 (전면)	2004.6.25.서고시2004-204호 (2007.8.23.서고시2007-282호)
변경	해 제										

○ 성북구 정릉3동 895번지 일대(정릉 제8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, 30,068㎡)

구분	구역 번호	동 명	지번	면적 (ha)	용적률	건폐율	층수	추진 단계	사업시행 방 식	정비 유형	예정구역지정일
당초	1	정릉3동	895	3.0	170%	60%	5층 이하	1	주택 재개발	전면 (수복)	2004.6.25.서고시2004-204호
변경	해 제										

2. 위치도 및 지형도면 : 붙임과 같음
3. 정비예정구역 실효사유 및 실효일

- 실효사유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에 의한 정비예정구역 해제
- 실효 일 : 고시 게재일

4.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(02-2133-7234), 성북구청 주거정비과(02-2241-2875)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붙임 :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도면

붙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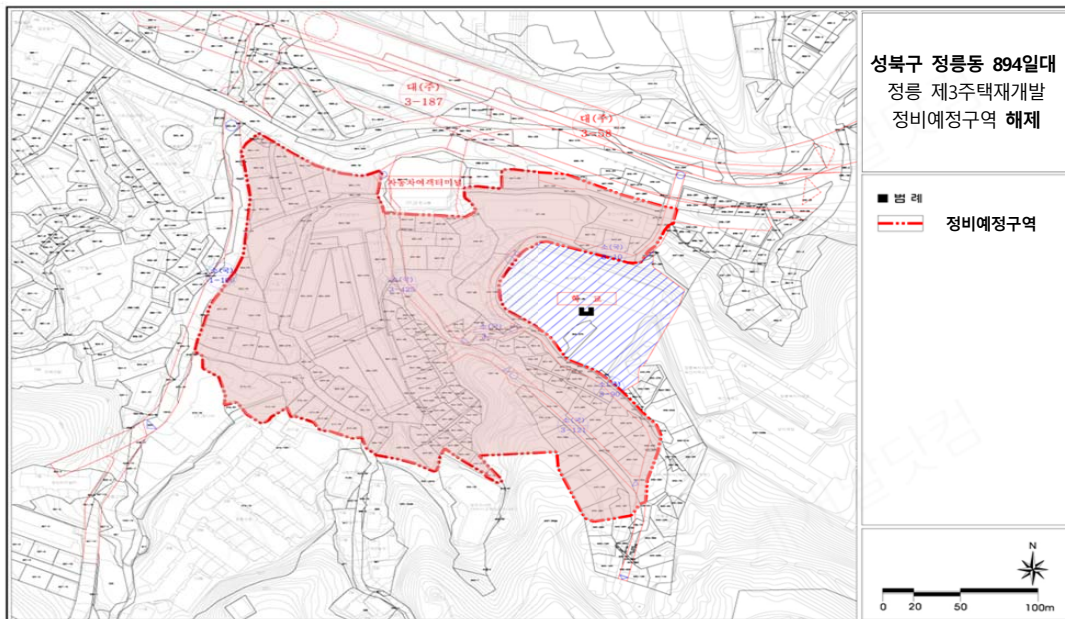
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도면(2개소)

1. 성북구 정릉3동 894 일대(정릉 제3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)

■ 위치도



■ 정비예정구역도(해제)



2. 성북구 정릉3동 895 일대(정릉 제8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)

■ 위치도



■ 정비예정구역도(해제)

